|  |  |  |
| --- | --- | --- |
| **농작물 종자 생산경영허가** **관리방법**농업부령 2011년 제3호《농작물 종사 생산경영허가 관리방법》이 2011년 농업부 제4차 상무회의 심의에 통과된 바, 이에 공표한다. 201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한장부(韩长赋)2011년 8월 22일 **제1장 총 칙** **제1조** 농작물 종자의 생산, 경영허가 관리를 강화하고 농작물 종자의 생산, 경영 질서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농작물 종자의 생산, 경영허가증의 신청, 심사, 발급과 감독관리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문은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농작물 종자의 생산, 경영허가증의 수리, 심사, 발급과 감독관리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4조** 농작물 종자 생산, 경영허가증의 심사, 발급을 책임지는 농업행정 주관부문은 농작물 종자 생산, 경영허가증의 처리조건, 순서 등을 사무공간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 농업행정 주관부문은 농업 생산안전, 농작물 품종 선별배양과 생산수준의 제고, 공평한 경쟁촉진 보장에 도움이 되는 원칙에 따르고 법에 의거하여 농작물 종자 생산, 경영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2장 생산허가** **제6조** 주요 농작물 상품종자를 생산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주요 농작물 종자 생산허가증(이하 “종자 생산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주요 농작물 교배종자 및 그 암수개체, 일반 원종 종자의 생산허가증은 생산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문이 심사하고, 성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문이 발급한다. 기타 주요농작물종자생산허가증은 소재지 현 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서어세 심사하여 발급한다. 생산소재지에서는 비주요 농작물이고 기타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주요 농작물일 때, 생산자가 종자 생산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생산소재지 농업행정 주관부문은 법에 의거하여 수리하고 발급해야 한다.  **제7조** 종자 생산허가증의 수령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잡종 벼, 잡종 옥수수 종자 및 그 암수개체 종자의 생산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자본금은 3,000만 위안보다 적을 수 없다. 기타 주요 농작물 종자의 생산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자본금은 500만 위안보다 적을 수 없다.  (2) 생산하는 품종이 품종 심사결정을 통과. 식물 신품종권을 보유한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 품종권한자의 서면동의를 취득해야 한다.  (3) 완벽한 순도 분석기, 전자저울, 직상(置床)설비, 전자이동 측정기, 전자이동 탱크, 샘플분쇄기, 오븐, 생물현미경, 냉장고 등 각 1대 이상의 설비를 보유하고, 전자저울(감도 100분의 1, 천분의 1, 만분의1)1세트 이상, Sampling device, Sample divider, 발아함 등 각 2대(세트)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잡종 벼, 잡종 옥수수 종자의 생산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pcr Amplification instrument, 산도계, 고압멸균기, 자기력 교반기, 항온 water bath, 고속냉동 이심기, Complete sets of pipette 각 1대(세트)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4) 실험실 면적 100m2 이상. 잡종 벼, 잡종 옥수수 종자 및 그 암수개체의 생산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실험실 면적은 150m2 이상이어야 한다.  (5) 창고면적 500m2 이상, 곡물 건조장소 1,000m2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종자 건조 설비 (6) 전문 종자 생산기술인원, 저장기술인원과 성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문이 심사합격시킨 종자 검험인원(논밭 포괄검험, 샘플추출과 실내검험, 이하 동일) 각 3명이상. 그 중, 잡종 벼, 잡종 옥수수 종자 및 그 암수개체 종자의 경우, 종자 생산기술인원과 종자 검험인원이 각 5명 이상일 것.  (7) 생산지역에 검역성 유해생물이 없음.  (8) 종자 생산 규정이 요구하는 격리/생산 조건에 부합됨.  (9) 농업부가 규정한 기타조건  **제8조** 종사 생산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종자 생산허가증 신청표  (2) 자금심사보고 또는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내의 연도 회계 재무제표 및 중개기구의 심계보고 등 등록자본 증명자료 사본. 종자 검험 등 설비명세표와 구매 세금계산서 사본. 생산지 소재 성(자치구, 직할시)의 종자 검험실, 창고의 부동산 권리증명 사본. 생산지 소재 성(자치구, 직할시)의 곡물 건조장 부동산 권리증명(또는 임대계약서)사본, 또는 종자 건조시설 설비의 권리증명 사본. 계량 검정기구가 발급한 계량관련 검험설비 검정증서 사본. 관련 시설 설비의 현황설명서 및 실제 사진.  (3) 종자 생산, 저장, 검험기술인원 자질 증명서와 노동계약서 사본  (4) 종자 생산지역 검역증명서 (5) 품종 심사결정증서 사본  (6) 식품 신품종권을 보유한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 품종권자의 서면동의 증명  (7) 종자 생산안전 격리와 생산조건 설명서 (8) 농업부가 규정한 기타 자료  종자 생산허가증 신청자가 이미 종자 경영허가증을 취득한 경우, 전 항의 제2항이 규정한 종자 저장, 검험기술인원 자질증명서 및 노동계약서 사본의 제출을 면제한다. 단, 종자 경영허가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심사기관은 신청 수리일로부터 20일 업무일 이내에 심사업무를 완료해야 한다. 심사 시 생산지역, 곡물 건조장 또는 건조시설 설비, 저장시설, 검험설비 등에 대해 실제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유관 증명자료 원본(상응하는 작물 종자 경영허가증을 보유한 경우, 생산지역에 대해서만 조사함)을 조사해야 한다. 본 방법이 규정한 조건을 구비한 경우, 심사의견에 서명하고 발급기관에 보고한다.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유를 설명한다. 심사발급기관은 심사의견과 신청자료 수이일로부터 20일 업무일 내에 심사발급업무를 완료해야 한다. 심사발급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현지시찰도 진행할 수 있다. 조건에 부합되면 종자생산허가증을 발급하고 공고하며 조건이 부합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0조** 종자 생산허가증은 허가증번호, 기업명칭, 주소, 법정대표인, 등록자본금, 발급기관, 공고문 번호, 발급일자 및 생산 종자의 작물종류, 품종명칭, 심사결정 일련번호, 식물 신품종권 번호, 생산지역, 유효기간 등 항목이 명시되어야 한다.  허가증 번호는 “\_\_(X) 농종생허자(X) 제X호” 이다. 그 중, 첫번째 괄호는 발급기관의 약칭이 들어가며, 두번째 괄호는 첫 발급 연도번호, 세번째 괄호는 4자리 순서번호이다. “ \_\_\_”에는 생산하는 종자의 유형이 표기된다. B는 잡종 벼와 잡종 옥수수 종자 및 그 암수개체이며, c는 기타 주요 농작물 종자이다.  **제11조** 종자 생산허가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동일한 기업이 생산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동일 발급기관에 동류 작물 품종의 증대생산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기관이 원 허가증 상 관련 품종을 추가하고 생산허가증을 재발행하지 않는다.  종자 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종자 생산자가 동일한 발급기관에 신규증서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증 만료 70일 전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3장 경영허가** **제12조** 농작물 종자를 경영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농작물 종자 경영허가증(이하 “종자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주요 농작물 잡종 종자 및 그 암수개체, 일반 원종 종자의 경영허가증은 종자 경영자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관리부문이 심사하고 성급 인민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문이 발급한다.  아래의 종자경영허가증은 종자 경영자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문이 심사하고 농업부가 발급한다.  (1) 종자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는 회사의 종자 경영허가증.  (2) 선별배양, 생산, 경영을 시행하고 등록자본이 1억 위안 이상에 달하는 회사의 종자 경영허가증. 기타 농작물 종자 경영허가증은 종자경영자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문이 심사한다.  **제13조** 잡종 벼, 잡종 옥수수 종자 및 그 암수개체의 경영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등록자본금이 3,000만 위안 이상이며, 고정자산이 1,0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2) 완벽한 순도분석기, 전자저울, 직상(置床)설비, 전자이동측정기, 전자이동탱크, 샘플분쇄기, 오븐, 생물현미경, 냉장고 등 각 1대 이상의 설비를 보유하고, 전자저울(감도 100분의 1, 천분의 1, 만분의1)1세트 이상, Sampling device, Sample divider, 발아함 등 각 2대(세트) 이상, pcr Amplification instrument, 산도계, 고압멸균기, 자기력 교반기, 항온 water bath, 고속냉동 이심기, Complete sets of pipette 각 1대(세트) 이상. 검험실 면적 150m2 이상.  (3) 본 방법 제7조 제5항이 요구한 종자 창고, 곡물 건조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건조시설 설비, 영업장소 300m2이상에 부합하는 경우. (4) 종자가공 플랜트 설비를 보유하고, 총 가공능력이 잡종 옥수수 종자 10톤/h이상, 잡종 벼 5톤/h이상이며, 가공공장 면적이 500m2 이상.  (5) 전문 종자 가공기술인원 5명 이상, 종자 저장기술인원 3명 이상, 성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문이 심사 합격시킨 종자 검사인원 5명 이상. (6) 농업부가 규정한 기타 조건.  **제14조** 잡종 벼, 잡종 옥수수 및 그 암수개체 이외의 가공, 포장해야 하는 농작물 종자의 경영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주요 농작물 종가의 경영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자본금은 500만 위안보다 적을 수 없으며, 고정자산은 250만 위안보다 적을 수 없다. 비주요 농작물 종자의 경영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자본금은 200만 위안보다 적을 수 없고 고정자산은 100만 위안보다 적을 수 없다.  (2) 완벽한 순도분석기, 전자저울, 직상(置床)설비, 전자이동측정기, 전자이동탱크, 샘플분쇄기, 오븐, 생물현미경, 냉장고 등 각 1대 이상의 설비를 보유하고, 전자저울(감도 100분의 1, 천분의 1, 만분의1)1 세트 이상, Sampling device, Sample divider, 발아함 등 각 2대(세트) 이상. 검험실 100m2 이상.  (3) 주요 농작품 종자를 경영하는 경우, 본 방법 제7조 제5항에서 요구한 종자 창고, 곡물 건조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건조시설 설비, 영업장소 200m2 이상에 부합. 비주요 농작물 종자를 경영하는 경우, 창고 면적 300m2 이상, 곡물건조장 500m2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건조시설 설비가 있으며, 영업장소 200m2 이상.  (4) 일반 벼, 밀 종자를 경영하는 경우, 종자가공 플랜트 설비의 총가공능력이 10톤/h 이상. 대두 종자를 경영하는 경우, 종자가공 플랜트 설비의 총가공능력이 3톤/h 이상. 면화, 유채 종자를 경영하는 경우, 종자가공 플랜트 설비의 총가공능력이 1톤/h 이상. 기타 농작물 종자를 경영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종자가공 설비를 보유.  (5) 주요 농작물 종자를 경영하는 경우, 종자가공 공장 면적 500m2 이상. 비주요 농작물 종자를 경영하는 경우, 종자가공 공장 면적 200m2 이상. (6) 전문 종자 가공기술 인원, 저장기술인원과 성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문이 심사 합격시킨 종자 검사인원을 각 3명 이상 보유.  농업부가 규정한 가공, 포장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농작물 종자 경영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그 등록자본금과 고정자산은 전항 제1항 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종자검사, 저장시설설비와 인원의 구체적인 요구는 성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문이 규정하여 농업부에 비안한다.  **제15조** 종자 수출입업무에 종사하는 회사가 종자 경영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등록자본금 3,000만 위안 이상, 고정자산 1,000만 위안 이상. (2) 본 방법이 규정한 농작물 종자 경영허가증 발급의 기타 조건.  **제16조** 선별배양, 생산, 경영을 함께 시행하고 등록자본금이 1억 위안 이상인 회사가 종자 경영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고정자산 5,000만 위안 이상.  (2) 완벽한 순도 분석기, 전자저울, 직상(置床)설비, 전자이동측정기, 전자이동탱크, 샘플분쇄기, 오븐, 생물현미경, 냉장고 등 각 2대 이상의 설비를 보유하고, 전자저울(감도 100분의 1, 천분의 1, 만분의1) 2세트 이상, Sampling device, Sample divider, 발아함 등 각 3대(세트) 이상, pcr Amplification instrument, 산도계, 고압멸균기, 자기력 교반기, 항온 water bath, 고속냉동 이심기, Complete sets of pipette 각 2대(세트) 이상을 보유. 검험실 면적 200m2 이상.  (3) 주요 농작물 종자의 경영을 신청하는 경우, 창고면적 1500m2 이상, 곡물 건조장 3000m2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종자 건조시설 설비 보유, 영업장소 500m2 이상. 비주요 농작물 종자의 경영을 신청하는 경우, 창고면적 300m2 이상, 곡물 건조장 500m2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종자 건조시설 설비 보유, 영업장소 300m2 이상.  (4) 잡종 벼와 잡종 옥수수 종자 및 그 암수개체 종자의 경영을 신청하는 경우, 그 종자 경영규모에 상응하는 종자 건조시설 설비를 구비해야 하며, 잡종 벼 종자 및 그 암수개체 종자 가공플랜트 설비의 총가공능력은 10톤/h 이상이어야 한다. 잡종 옥수수 종자 및 그 암수개체 종자 가공플랜트 설비의 총가공능력은 20톤/h 이상이어야 하고, 가공공장 면적은 800m2 이상이어야 한다. 기타 농작물 종자의 경영을 신청하는 경우, 가공능력과 가공공장은 본 방법 제14조 제4, 5항의 관련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5) 전문 종자 생산, 가공, 저장기술인원과 성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문이 심사합격시킨 종자 검사인원은 각 5명 이상이어야 한다.  (6) 전문적인 육종기구는 고정적인 육종인원과 업무경비, 연간 과학경비를 투입을 총 이윤의 10%이하를 투입할 수 없다. 자가보유 연구실험실 면적 300m2이상, 안정적인 육종용지 100묘(역주: 1묘는 666.67m2)이상, 그 중 전국 3개 이상의 서로 다른 생태구역의 3개 이상의 테스트 지역 보유. 모든 지역은 10묘 이상의 실험용지 및 그에 상응하는 파종, 수확, 연구시설 보유. 전문적으로 육종연구에 종사하는 중급이상 직함(또는 관련 전공 본과 이상의 학력) 연구인력 5명 이상. 주요 농작물 종자를 생산 경영하는 경우, 모든 작물은 육종연구에 종사하는 고급직함(또는 관련 전공 석사 이상의 학력) 연구인원 1명 이상을 보유.  (7) 안정적인 종사 생산기지 보유. 그 중 주요 농작물 종자를 경영하는 경우, 기지 면적 5,000묘 이상. 기타 농작물 종자의 경영하는 경우, 기지 500묘 이상.  (8) 건전한 A/S 체계 보유.  (9) 주요 농작물 종자 경영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업 명의로 단독 신청하고 국가급 심사결정에 통과한 2개 이상의 품종 또는 신청기업 명의로 단독 신청하고 최소 3개 성(자치구, 직할시)의 성급 심사결정을 통과한 5개 이상의 품종. 비주요 농작물 종자 경영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업 명의로 식물 신품종권을 단독 획득한 5개 이상의 품종.  (10) 작물종류의 종자 경영량을 신청일 전 3년 내(신청 당해 불포함)에 신청하고 1년 이상 전국 해당종류 작물 종자의 시장점유율을 1% 이상 차지함. 자주적 지적재산권 품종의 경영량이 회사 경영총량의 10% 이상을 차지함.  (11) 농업부가 규정한 기타 조건.  **제17조** 종자 경영허가증은 신청하려면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농작물 종자 경영허가증 신청표.  (2) 자금심사보고 또는 신청일 전 1년 내의 연도 재무제표 및 중개기구 심계보고 등 등록자본과 고정자산 증명자료 사본. 신청단위의 성질, 자본구성 등 기본정황 증명자료. (3) 종자검험, 가공 등 시설설비 명세표와 구매 세금계산서 사본. 종자 실험실, 가공공장, 창고의 부동산 권리증 사본. 곡물 건조장의 부동산 권리증(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또는 종자 건조시설 설비의 부동산 권리증 사본. 계량검정기구가 발급한 관련 계량 검험, 포장설비 검정증서 사본. 관련 시설 설비의 정황설명서 및 실제 사진.  (4) 종자 검험, 가공, 저장 등 유관 기술인원의 자격증명과 노동계약서 사본.  (5) 농업부가 규정한 기타자료. **제18조** 선별배양, 생산, 경영을 함께 시행하는 회사가 농업부가 발급하는 농작물 종자 경영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제17조에 규정된 자료 이외에 아래의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육종기구 정황설명서. 육종연구 시설설비의 자가 재산권리증 사본 및 실제사진. 육종연구와 품종 실험용지의 5년 이상의 운용계약서 사본.  (2) 육종인원의 직함(또는 학력) 증명자료 및 노동계약서 사본.  (3) 신청일 전 3년간의 연도 재무제표 및 중개기구 심계보고 사본.  (4) 품종 심사결정증서 또는 식물 신품종권 증서 사본은 품종 자주 생산경영권을 구비한 증명서. 신청일 이전 3년간의 허가 신청 작물의 종자경영량, 경영액 및 전국 시장 점유율 설명서 및 관련 증명. 자주 지적재산권 품종의 종자경영량, 경영액 설명서 및 관련 증명  (5) 신청일 이전 3년간의 종자 생산기지 증명자료 - 생산지역(구체적인 행정구역까지 기입), 생산면적, 기지 마을(조) 연락인과 생산수탁인의 전화번호 표 포함. 생산계약 사본 10부 또는 토지 운용계약서 사본. (6) 건전한 A/S 체계 증명자료 – A/S 제도와 A/S 네트워크 구축 현황 등 포함.  (7) 유효기간 만료 전 재신청하는 경우, 원 종자 경영허가증 유효기간 내의 종자 생산경영과 육종연구 현황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9조** 심사기관은 신청 수리일로부터 20일 업무일 내에 심사업무를 완수해야 한다. 심사기관은 영업장소, 가공창고 시설, 검사시설 설비에 대해 실제 심사와 유관 증명자료 원본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본 방법이 규정한 조건을 구비한 경우, 심사의견에 서명하여 발급기관에 보고한다.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이유를 설명한다.  발급기관은 신청자료와 심사의견 접수일로부터 20일 업무일 내에 발급업무를 완수해야 한다. 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종자 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공고한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이유를 설명한다. **제20조** 종자 경영허사증은 허가증 일련번호, 기업명칭, 주소, 법정대표인, 등록자본, 발급기관, 공고문건번호, 발급일자 및 경영 작물범위, 경영방식, 유효지역, 유효기간 등 항목을 명시해야 한다.  (1) 허가증 일련번호는 “\_\_\_(X) 농종경허자(X) 제 X호”로 표시된다. 첫번째 괄호에는 발급기관의 약칭이 들어가며, 두번째 괄호에는 첫 발급 연도번호, 세번째 괄호에는 4자리 순서번호가 표기된다. “ \_\_\_”에는 생산하는 경영유형이 표기된다. a는 농업부가 발급하고 선별배양, 생산, 경영을 함께 시행하는 경우이다. b는 잡종 벼와 잡종 옥수수 종자 및 그 암수개체 종자. C는 잡종 벼, 잡종 옥수수 이외의 주요 농작물 종자. d는 비주요 농작물 종자. E는 종자 수출입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2) 경영작물 범위에는 주요 농작물 작물명칭을 기입하고, 비주요 농작물에는 채소, 화훼, 마(麻)류 등 작물유형을 기입한다.  (3) 종자경영방식에는 가공, 포장, 도매, 소매 또는 수출입을 기입한다.  (4) 유효지역은 행정구역에 따라 기입하고 최대 발급기관의 관할범위를 초과하지 않게 발급기관이 결정한다.  **제21조** 종자 경영허가증 유효기간은 5년이다. 유효기간 내에 허가증 표기항목을 변경하는 경우 원 신청절차에 따라 변경수속을 처리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경영허가증 기한만료 후 종자 경영에 계속하여 종사하는 경우, 종자 경영자는 기한만료 6개월 전에 재신청해야 한다.  **제22조** 종자경영자가 소포장하지 않은 포장 종자를 전문적으로 경영하거나 종자경영허가증을 보유한 종자경영자의 서면 위탁을 받아 그 종자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종자 경영허가증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고정적인 영업장소가 있어야 한다.  소포장하지 않은 포장 종자를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경우, 종자 구입 시 반드시 종자 경영허가증을 구비한 종자기업과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종자 경영허가증을 구비한 종자 경영자의 위탁을 받아 종자를 판매하는 경우, 위탁자와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23조** 종자 경영자가 경영허가증 규정의 유효지역에 분지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국에 공상등기를 처리해야 하며, 영업집조 취득 또는 변경 15일 내에 현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문과 원 발급기관에 비안해야 한다. 비안 시 종자경영허가증, 영업집조 사본 및 분지기구의 주소, 경영방식, 책임인 성명, 연락처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24조** 주요 농작물 종자 생산자는 종자 생산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종자생산을 조직해야 한다. 종자 생산자는 종자생산 보관서류 건립해야 하며, 파종 후 30일 내에 생산지역, 품종명칭, 생산면적 등의 정보를 생산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문은 생산정보를 취합하여 농업부까지 상급 부문들에 차례로 보고해야 한다.  **제25조** 종자경영자는 종자경영 보관서류를 건립하고, 종자 원산지, 가공, 저장, 운수와 품질검측 단계의 간략 설명서 및 책임자, 판매추세 등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종자경영기업은 매년 5월 말 전에 직전년도 주요 경영활동을 발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발급기관은 종자경영정보는 취합하여 농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2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문은 종자 생산, 경영자의 종자생산, 경영행위에 대해 감독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27조** 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발급기관은 허가증을 취소하고 공고해야 한다.  (1) 종자 생산, 경영자가 생산, 경영활동을 1년 이상 정지한 경우. (2) 종자 생산, 경영자가 본 방법이 규정한 허가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하였으나 여전히 요구사항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제28조** 신청인이 관련 정황을 은폐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종자 생산/경영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농업행정 주관부문은 허가를 하지 않으며, 관련 정황을 통보한다. 신청인은 1년 내에 다시 종자 생산/경영허가증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인이 기만, 뇌물 등 부정한 수단으로 종자 생산/경영허가증을 취득한 경우, 농업행정 주관부문은 행정허가를 철회하고 관련 정황을 통보해야 한다. 신청인은 3년 내에 다시 종자 생산/경영허가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제29조** 상급 농업행정 주관부문은 하급 농업행정 주관부문의 종자 생산경영허가 행위에 대해 감독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아래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개정을 명령하고 직접적으로 책임을 갖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을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사법기관에 이관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발급권한에 따르지 않고 종자 생산/경영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2) 독단적으로 발급표준을 낮추어 종자 생산/경영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3) 기타 법에 의거하지 않고 종자 생산/경영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제30조** 농업행정 주관부문이 법에 의거하여 위법행위자의 종자 생산/경영허가증을 취소, 철회, 말소하는 경우, 결정 후 5일 이내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영업집조 말소 또는 변경을 통지해야 한다.  **제31조** 농업행정 주관부문은 종자 생산과 경영허가 관리 네트워크 상에서의 조회체계를 건립하여 관련 허가 정보를 공표해야 한다. 단, 법에 의거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로 한다.  관리과정 중 지득한 종자 생산/경영자의 상업비밀에 대해 농업행정 주관부문 및 그 업무인원은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제5장 부 칙** **제32조** 본 방법이 종자생산이라 칭하는 것은 종자의 재배, 수확, 자연건조 또는 건조하는 활동을 뜻한다.  본 방법이 종자경영이라 칭하는 것은 생산하는 종자에 대해 선별, 등급분류, 건조, 외막 코팅 등 가공처리 및 포장, 라벨링, 판매 등 활동을 뜻한다.  **제33조** 본 방법이 종자가공 플랜트 설비라 칭하는 것은 주기계와 부대 시스템이 정합되고 가공공장 내에 고정설치 되어 종자의 정선(精选), 계량과 포장 연속 업무기능을 실현하는 종자 가공시스템을 뜻한다. 주기계는 주로 바람선별기(풍구 부분은 전후 통풍로와 쌍으로 된 침전실이 있어야 함. 체 부분은 3층 이상의 체로 되어야 함), 중력식 선별기와 컴퓨터 계량 포장 산출설비를 포함한다. 부대 시스템을 주로 운송시스템, 저장시스템, 제진시스템, 불순물제거 시스템과 컴퓨터 제어시스템 등을 포함한다. 잡종 벼 종자의 가공 플랜트설비는 길이선별 업무를 완성할 수 있는 안와통 선별기를 포함한다.  본 방법이 고정자산이라 하는 것은 기업이 제품생산, 서비스제공, 임대 또는 경영관리 보유, 사용하는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비화폐성 자산을 뜻한다. 건물, 건축물, 기계, 운송도구 및 기타 생산경영활동과 관련된 설비, 기구, 공구 등을 포함한다.  **제34조** 본 방법이 규정한 종자 연구, 생산, 가공, 검험, 저장 등 인원은 소속기업과 3년 이상의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본 방법이 규정한 종자생산, 가공, 검험시설 설비 및 종자 검험실, 창고, 종자 건조시설 설비, 가공공장은 신청기업이 재산권을 보유해야 한다.  **제35조** 유전자변형 농작물 종자의 생산, 경영허가증 규정은 농업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36조** 농업행정 주관부문이 설립되지 않은 구(현, 시)의 종자 생산/경영허가증은 지(시)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문이 심사한다.  **제37조** 농작물 종자 생산/경영허가증은 농업부가 일률적으로 인쇄제작하며, 관련 서식은 농업부에서 일률 제정한다.  **제38조** 본 방법은 201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농업부가 2001년 2월 26일 발표, 2004년 7월 1일 수정한 《농작물 종자 생산경영허가증 관리방법》(농업부령 제48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농업부가 본 방법 시행 전 발표한 유관 종자 생산/경영허가증 규정과 본 방법이 불일치하는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한다.  본 방법 시행일 전 이미 농작물 종자 생산허가증을 취득하고 유효기간이 본 방법 시행일부터 2012년 4월 1일 사이에 만료되는 기업은 그 종자 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2012년 4월 1일까지로 연장된다. 이미 농작물 종자 경영허가증을 취득하고 유효기간이 본 방법 시행일부터 2012년 9월 25일 사이에 만료되는 기업은 그 종자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2012년 9월 25일까지로 연장된다.  |  | **农作物种子生产经营许可****管理办法**农业部令2011年第3号　　《农作物种子生产经营许可管理办法》已经2011年农业部第4次常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1年9月25日起施行。　　部长 韩长赋　　二○一一年八月二十二日**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加强农作物种子生产、经营许可管理，规范农作物种子生产、经营秩序，根据《中华人民共和国种子法》，制定本办法。　　**第二条**　农作物种子生产、经营许可证的申请、审核、核发和监管，适用本办法。　　**第三条**　县级以上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按照职责分工，负责农作物种子生产、经营许可证的受理、审核、核发和监管工作。　　**第四条**　负责审核、核发农作物种子生产、经营许可证的农业行政主管部门，应当将农作物种子生产、经营许可证的办理条件、程序等在办公场所公示。　　**第五条**　农业行政主管部门应当按照有利于保障农业生产安全、提升农作物品种选育和生产水平、促进公平竞争的原则，依法发放农作物种子生产、经营许可证。**第二章　生产许可**　　**第六条**　生产主要农作物商品种子的，应当依法取得主要农作物种子生产许可证（以下简称种子生产许可证）。主要农作物杂交种子及其亲本种子、常规种原种种子的生产许可证由生产所在地县级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审核，省级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核发。其他主要农作物的种子生产许可证由生产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核发。　　生产所在地为非主要农作物，在其他省（自治区、直辖市）为主要农作物，生产者申请办理种子生产许可证的，生产所在地农业行政主管部门应当受理并依法核发。　　**第七条**　申请领取种子生产许可证，应当具备以下条件：　　（一）申请杂交稻、杂交玉米种子及其亲本种子生产许可证的，注册资本不少于3000万元；申请其他主要农作物种子生产许可证的，注册资本不少于500万元；　　（二）生产的品种通过品种审定；生产具有植物新品种权的种子，还应当征得品种权人的书面同意；　　（三）具有完好的净度分析台、电子秤、置床设备、电泳仪、电泳槽、样品粉碎机、烘箱、生物显微镜、电冰箱各1台（套）以上，电子天平（感量百分之一、千分之一和万分之一）1套以上，扦样器、分样器、发芽箱各2台（套）以上；申请杂交稻、杂交玉米种子生产许可证的，还应当配备pcr扩增仪、酸度计、高压灭菌锅、磁力搅拌器、恒温水浴锅、高速冷冻离心机、成套移液器各1台（套）以上；　　（四）检验室100平方米以上；申请杂交稻、杂交玉米种子及其亲本种子生产许可证的，检验室150平方米以上；　　（五）有仓库500平方米以上，晒场1000平方米以上或者相应的种子干燥设施设备；　　（六）有专职的种子生产技术人员、贮藏技术人员和经省级以上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考核合格的种子检验人员（涵盖田间检验、扦样和室内检验，下同）各3名以上；其中，生产杂交稻、杂交玉米种子及其亲本种子的，种子生产技术人员和种子检验人员各5名以上；　　（七）生产地点无检疫性有害生物；　　（八）符合种子生产规程要求的隔离和生产条件；　　（九）农业部规定的其他条件。　　**第八条**　申请种子生产许可证，应当提交以下材料：　　（一）种子生产许可证申请表；　　（二）验资报告或者申请之日前1年内的年度会计报表及中介机构审计报告等注册资本证明材料复印件；种子检验等设备清单和购置发票复印件；在生产地所在省（自治区、直辖市）的种子检验室、仓库的产权证明复印件；在生产地所在省（自治区、直辖市）的晒场的产权证明（或租赁协议）复印件，或者种子干燥设施设备的产权证明复印件；计量检定机构出具的涉及计量的检验设备检定证书复印件；相关设施设备的情况说明及实景照片；　　（三）种子生产、贮藏、检验技术人员资质证明和劳动合同复印件；　　（四）种子生产地点检疫证明；　　（五）品种审定证书复印件；　　（六）生产具有植物新品种权的种子，提交品种权人的书面同意证明；　　（七）种子生产安全隔离和生产条件说明；　　（八）农业部规定的其他材料。　　种子生产许可证申请者已取得相应作物的种子经营许可证的，免于提交前款第二项规定的材料和种子贮藏、检验技术人员资质证明及劳动合同复印件，但应当提交种子经营许可证复印件。　　**第九条**　审核机关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0个工作日内完成审核工作。审核时应当对生产地点、晒场或者干燥设施设备、贮藏设施、检验设施设备等进行实地考察并查验有关证明材料原件（对具有相应作物种子经营许可证的只考察生产地点）。具备本办法规定条件的，签署审核意见，上报核发机关；审核不予通过的，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核发机关应当自收到审核意见和申请材料之日起20个工作日内完成核发工作。核发机关认为有必要的，可以进行实地考察。符合条件的，发给种子生产许可证并予公告；不符合条件的，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第十条**　种子生产许可证应当注明许可证编号、企业名称、住所、法定代表人、注册资本、发证机关、公告文号、发证时间，以及生产种子的作物种类、品种名称、审定编号、植物新品种权号、生产地点、有效期限等项目。　　许可证编号为“\_\_（x）农种生许字（x）第x号”。其中，第一个括号内为发证机关简称，第二个括号内为首次发证年号，第三个号码为四位顺序号；“\_\_”上标注生产种子的类型：b为杂交稻和杂交玉米种子及其亲本种子，c为其他主要农作物种子。　　**第十一条**　种子生产许可证有效期3年。同一企业在生产许可证有效期内向同一核发机关申请增加生产同类作物品种的，由核发机关在原证上加注相应品种，不再另行发放生产许可证。　　种子生产许可证有效期满后，种子生产者需在同一核发机关申领新证的，应当在许可证期满70日前重新提出申请。**第三章 经营许可**　　**第十二条**　经营农作物种子的，应当依法取得农作物种子经营许可证（以下简称种子经营许可证）。　　主要农作物杂交种子及其亲本种子、常规种原种种子经营许可证，由种子经营者所在地县级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审核，省级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核发。　　下列种子经营许可证，由种子经营者所在地省级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审核，农业部核发：　　（一）从事种子进出口业务的公司的种子经营许可证；　　（二）实行选育、生产、经营相结合，注册资本达到1亿元以上的公司的种子经营许可证。　　其他农作物种子经营许可证，由种子经营者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核发。　　**第十三条**　申请杂交稻、杂交玉米种子及其亲本种子经营许可证，应当具备以下条件：　　（一）注册资本不少于3000万元，固定资产不少于1000万元；　　（二）具有完好的净度分析台、电子秤、置床设备、电泳仪、电泳槽、样品粉碎机、烘箱、生物显微镜、电冰箱各1台（套）以上，电子天平（感量百分之一、千分之一和万分之一）1套以上，扦样器、分样器、发芽箱各2台（套）以上，pcr扩增仪、酸度计、高压灭菌锅、磁力搅拌器、恒温水浴锅、高速冷冻离心机、成套移液器各1台（套）以上；检验室150平方米以上；　　（三）有符合本办法第七条第五项要求的种子仓库、晒场或者相应的干燥设施设备，营业场所300平方米以上；　　（四）具有种子加工成套设备，总加工能力杂交玉米种子不低于10吨/小时，杂交稻种子不低于5吨/小时，加工厂房500平方米以上；　　（五）有专职种子加工技术人员5名以上，种子贮藏技术人员3名以上，经省级以上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考核合格的种子检验人员5名以上；　　（六）农业部规定的其他条件。　　**第十四条**　申请杂交稻、杂交玉米种子及其亲本种子以外的应当加工、包装的农作物种子经营许可证，应当具备以下条件：　　（一）申请主要农作物种子经营许可证的，注册资本不少于500万元，固定资产不少于250万元；申请非主要农作物种子经营许可证的，注册资本不少于200万元，固定资产不少于100万元；　　（二）具有完好的净度分析台、电子秤、置床设备、电泳仪、电泳槽、样品粉碎机、烘箱、生物显微镜、电冰箱各1台（套）以上，电子天平（感量百分之一、千分之一和万分之一）1套以上，扦样器、分样器、发芽箱各2台（套）以上；检验室100平方米以上；　　（三）经营主要农作物种子的，有符合本办法第七条第五项要求的种子仓库、晒场或者相应的干燥设施设备，营业场所200平方米以上；经营非主要农作物种子的，有仓库300平方米以上，晒场500平方米以上或者相应的干燥设施设备，营业场所200平方米以上；　　（四）经营常规稻、小麦种子的，种子加工成套设备总加工能力10吨/小时以上；经营大豆种子的，种子加工成套设备总加工能力3吨/小时以上；经营棉花、油菜种子的，种子加工成套设备总加工能力1吨/小时以上；经营其他农作物种子的，具有相应的种子加工设备；　　（五）经营主要农作物种子的，种子加工厂房500平方米以上；经营非主要农作物种子的，种子加工厂房200平方米以上；　　（六）有专职的种子加工技术人员、贮藏技术人员和经省级以上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考核合格的种子检验人员各3名以上。　　申请农业部规定的可以不经加工、包装的农作物种子经营许可证的，其注册资本和固定资产应当符合前款第一项的规定，种子检验、仓储设施设备和人员的具体要求由省级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规定，报农业部备案。**第十五条**　从事种子进出口业务的公司申请种子经营许可证，应当具备以下条件：（一）注册资本不少于3000万元，固定资产不少于1000万元；　　（二）本办法规定的核发相应农作物种子经营许可证的其他条件。　　**第十六条**　实行选育、生产、经营相结合，注册资本达到1亿元以上的公司，申请种子经营许可证的，应当具备以下条件：　　（一）固定资产不少于5000万元；　　（二）具有完好的净度分析台、电子秤、置床设备、电泳仪、电泳槽、样品粉碎机、烘箱、生物显微镜、电冰箱各2台（套）以上，电子天平（感量百分之一、千分之一和万分之一）2套以上，扦样器、分样器、发芽箱各3台（套）以上，pcr扩增仪、酸度计、高压灭菌锅、磁力搅拌器、恒温水浴锅、高速冷冻离心机、成套移液器各2台（套）以上；检验室200平方米以上；　　（三）申请经营主要农作物种子的，有仓库1500平方米以上，晒场3000平方米以上或者相应的种子干燥设施设备，营业场所500平方米以上；申请经营非主要农作物种子的，有仓库300平方米以上，晒场500平方米以上或者相应的种子干燥设施设备，营业场所300平方米以上；　　（四）申请经营杂交稻和杂交玉米种子及其亲本种子的，应当配备与其种子经营规模相适应的种子干燥设施设备，杂交稻种子及其亲本种子加工成套设备总加工能力达到10吨/小时以上，杂交玉米种子及其亲本种子加工成套设备总加工能力达到20吨/小时以上，加工厂房800平方米以上；申请经营其他农作物种子的，加工能力和加工厂房达到本办法第十四条第四、五项的相应要求；　　（五）有专职的种子生产、加工、贮藏技术人员和经省级以上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考核合格的种子检验人员各5名以上；　　（六）有专门的育种机构，固定的育种人员和工作经费，年科研经费投入不得低于年利润的10%；自有科研实验室300平方米以上，稳定的育种用地100亩以上，其中，在全国3个以上不同生态区各有3个以上的测试点，每个点有10亩以上试验用地以及相应的播种、收获、考种设施设备；有专职从事科研育种的中级以上职称（或者相关专业本科以上学历）研究人员5名以上；生产经营主要农作物种子的，每种作物还应当有从事科研育种的专职高级职称（或者相关专业硕士以上学历）研究人员1名以上；　　（七）有稳定的种子生产基地。其中，经营主要农作物种子的，基地5000亩以上；经营其他农作物种子的，基地500亩以上；　　（八）有健全的售后服务体系；　　（九）申请经营主要农作物种子的，有2个以上以申请企业名义单独申请并通过国家级审定的品种，或者5个以上以申请企业名义单独申请并至少在3个省（自治区、直辖市）通过省级审定的品种；申请经营非主要农作物种子的，有5个以上以申请企业名义单独获得植物新品种权的品种；　　（十）申请经营作物种类的种子经营量在申请之日前3年内（不含申请当年），有1年以上占全国该种类作物种子市场份额的1%以上。自主知识产权品种的经营量占公司经营总量的比例10%以上；　　（十一）农业部规定的其他条件。　　**第十七条**　申请种子经营许可证，应当提交以下材料：　　（一）农作物种子经营许可证申请表；　　（二）验资报告或者申请之日前1年内的年度会计报表及中介机构审计报告等注册资本和固定资产证明材料复印件；申请单位性质、资本构成等基本情况证明材料；　　（三）种子检验、加工等设施设备清单和购置发票复印件；种子检验室、加工厂房、仓库的产权证明复印件；晒场的产权证明（或租赁协议）复印件，或者种子干燥设施设备的产权证明复印件；计量检定机构出具的涉及计量的检验、包装设备检定证书复印件；相关设施设备的情况说明及实景照片；　　（四）种子检验、加工、贮藏等有关技术人员的资质证明和劳动合同复印件；　　（五）农业部规定的其他材料。　　**第十八条**　实行选育、生产、经营相结合的公司，申请农业部核发农作物种子经营许可证的，除提交第十七条规定的材料外，还应当提交下列材料：　　（一）育种机构情况说明；科研育种设施设备的自有产权证明复印件及实景照片；科研育种和品种试验用地5年以上流转协议复印件；　　（二）育种人员的职称（或学历）证明材料及劳动合同复印件；　　（三）申请之日前3年的年度会计报表及中介机构审计报告复印件；　　（四）品种审定证书或者植物新品种权证书复印件，具有品种自主生产经营权的证明；申请之日前3年申请许可作物的种子经营量、经营额及占全国市场份额的说明及相关证明；自主知识产权品种的种子经营量、经营额说明及相关证明；　　（五）申请之日前3年的种子生产基地证明材料，包括制种地点（具体到村）、制种面积、基地村（组）联系人和受委托制种人电话表，以及10份制种合同的复印件，或者土地流转协议复印件；　　（六）健全的售后服务体系证明材料，包括售后服务制度和售后服务网络建设情况等；　　（七）有效期届满前重新申请的，还应当提供原种子经营许可证有效期内种子生产经营和科研育种情况的证明材料。　　**第十九条**　审核机关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0个工作日内完成审核工作。审核机关应当对营业场所、加工仓储设施、检验设施设备进行实地考察并查验有关证明材料原件。具备本办法规定条件的，签署审核意见，上报核发机关；审核不予通过的，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核发机关应当自收到申请材料和审核意见之日起20个工作日内完成核发工作。核发机关认为有必要的，可以进行实地考察。符合条件的，发给种子经营许可证并予公告；不符合条件的，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第二十条**　种子经营许可证应当注明许可证编号、企业名称、住所、法定代表人、注册资本、发证机关、公告文号、发证日期，以及经营作物范围、经营方式、有效区域、有效期限等项目：　　（一）许可证编号为“\_\_（x）农种经许字（x）第x号”，第一个括号内为发证机关简称，第二个括号为首次发证年号，第三个号码为四位顺序号；“\_\_”上标注经营类型：a为农业部核发，实行选育、生产、经营相结合的；b为杂交稻和杂交玉米种子及其亲本种子；c为杂交稻、杂交玉米以外的主要农作物种子；d为非主要农作物种子；e为从事种子进出口业务；　　（二）经营作物范围，主要农作物填写作物名称，非主要农作物填写蔬菜、花卉、麻类等作物类别；　　（三）种子经营方式，填写加工、包装、批发、零售或进出口；　　（四）有效区域按行政区域填写，最大不超过核发机关管辖范围，由核发机关决定。　　**第二十一条**　种子经营许可证有效期为5年。在有效期内变更许可证标注项目的，应当按照原申请程序办理变更手续，并提供相应证明材料。　　经营许可证期满后继续从事种子经营的，种子经营者应当在期满6个月前重新申请。　　**第二十二条**　种子经营者专门经营不再分装的包装种子的，或者受具有种子经营许可证的种子经营者以书面委托代销其种子的，可以不办理种子经营许可证，但应当有固定的营业场所。　　专门经营不再分装的包装种子的，购进种子时应当与具备种子经营许可证的种子企业签订购销合同。　　受具有种子经营许可证的种子经营者委托代销其种子的，应当与委托方签订委托代销合同。　　**第二十三条**　种子经营者在经营许可证规定的有效区域设立分支机构的，应当到工商行政管理机关办理工商登记，并在取得或变更营业执照后15日内，向当地县级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和原发证机关备案。备案时应提交种子经营许可证、营业执照的复印件以及分支机构的住所、经营方式、负责人姓名、联系电话等材料。**第四章 监督管理**　　**第二十四条**　主要农作物种子生产者应当按照种子生产许可证的规定组织种子生产。种子生产者应当建立种子生产档案，并在播种后30日内，将生产地点、品种名称、生产面积等信息向生产所在地县级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报告。县级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应当将生产信息汇总后逐级上报至农业部。　　**第二十五条**　种子经营者应当建立种子经营档案，载明种子来源、加工、贮藏、运输和质量检测各环节的简要说明及责任人、销售去向等内容。　　种子经营企业应当在每年5月底前将上一年度主要经营活动向发证机关报告。发证机关应当将种子经营信息汇总后上报农业部。　　**第二十六条**　县级以上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应当对种子生产、经营者的种子生产、经营行为进行监督检查。　　**第二十七条**　在许可证有效期内，有下列情形之一的，发证机关应当注销许可证，并予以公告：　　（一）种子生产、经营者停止生产、经营活动1年以上的；　　（二）种子生产、经营者不再具备本办法规定的许可条件，经限期整改仍达不到要求的。　　**第二十八条**　申请人隐瞒有关情况或者提供虚假材料申请种子生产、经营许可证的，农业行政主管部门应当不予许可，并通报有关情况。申请人在1年内不得再次申请种子生产、经营许可证。　　申请人以欺骗、贿赂等不正当手段取得种子生产、经营许可证的，农业行政主管部门应当撤销行政许可，并通报有关情况。申请人在3年内不得再次申请种子生产、经营许可证。　　**第二十九条**　上级农业行政主管部门应当对下级农业行政主管部门的种子生产经营许可行为进行监督检查。有下列情形之一的，责令改正，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移送司法机关追究刑事责任：　　（一）未按核发权限发放种子生产、经营许可证的；　　（二）擅自降低核发标准发放种子生产、经营许可证的；　　（三）其他未依法核发种子生产、经营许可证的。　　**第三十条**　农业行政主管部门依法吊销、撤销、注销违法行为人的种子生产、经营许可证的，应当在决定作出后5个工作日内通知工商行政管理机关依法注销或变更营业执照。　　**第三十一条**　农业行政主管部门应当建立种子生产和经营许可管理网上查询系统，公布相关许可信息，但依法需要保密的除外。　　对管理过程中获知的种子生产、经营者的商业秘密，农业行政主管部门及其工作人员应当依法保密。**第五章 附 则**　　**第三十二条**　本办法所称种子生产，是指种植、采收、晾晒或者烘干种子的活动。　　本办法所称种子经营，是指对生产的种子进行清选、分级、干燥、包衣等加工处理，以及包装、标识、销售的活动。　　**第三十三条**　本办法所称种子加工成套设备，是指主机和配套系统相互匹配并固定安装在加工厂房内，实现种子精选、计量和包装流水作业功能的种子加工系统。主机主要包括风筛清选机（风选部分应具有前后吸风道，双沉降室；筛选部分应具有三层以上筛片）、重力式清选机和电脑计量包装喷码设备；配套系统主要包括输送系统、储存系统、除尘系统、除杂系统和电控系统。杂交水稻种子的加工成套设备还包括能够完成长度清选作业的窝眼筒清选机。　　本办法所称固定资产，是指企业为生产产品、提供劳务、出租或者经营管理而持有的、使用时间超过12个月的非货币性资产，包括房屋、建筑物、机器、机械、运输工具以及其他与生产经营活动有关的设备、器具、工具等。　　**第三十四条**　本办法规定的种子科研、生产、加工、检验、贮藏等人员，应当与所在企业签订有3年以上的劳动合同。　　本办法规定的种子生产、加工、检验设施设备，以及种子检验室、仓库、种子干燥设施设备、加工厂房，应当为申请企业自有产权。　　**第三十五条**　转基因农作物种子生产、经营许可规定，由农业部另行制定。　　**第三十六条**　没有设立农业行政主管部门的区（县、市），种子生产、经营许可证由地（市）级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审核。　　**第三十七条**　农作物种子生产、经营许可证由农业部统一印制，相关表格格式由农业部统一制定。　　**第三十八条**　本办法自2011年9月25日起施行。农业部2001年2月26日发布、2004年7月1日修订的《农作物种子生产经营许可证管理办法》（农业部令第48号）同时废止。农业部在本办法施行前发布的有关种子生产、经营许可的规定与本办法不一致的，适用本办法。　　本办法施行之日前已取得农作物种子生产许可证，且有效期在本办法施行之日至2012年4月1日届满的企业，其种子生产许可证的有效期自动延展至2012年4月1日；已取得农作物种子经营许可证，且有效期在本办法施行之日至2012年9月25日届满的企业，其种子经营许可证的有效期自动延展至2012年9月25日。 |